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12 선고 2020가단1242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14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16. 7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,865,1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865,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(소가계산표)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